



‘비친고죄’ ‘남성강간’ ‘유사강간’, 개정 형법의 세 개의 키워드



양재규 기획팀장

작년 12월 개정된 형법이 6월 19일 시행에 돌입했다. 1953년 9월 제정된 우리나라 형법은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번 개정 형법이 유독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성범죄 관련 친고죄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유사강간죄 신설, 강간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점도 눈에 띈다.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첫째, 종전 형법에서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제30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고죄(親告罪)’였다. 이번 개정 형법에서는 이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있는 성범죄 관련 친고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역시 모두 이번 법 개정으로 비친고죄가 되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공적인 문제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고죄로 두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벌권의 실현을 자제해왔다.

이런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 친고죄 제도는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유도, 형벌을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 폐지는 기존의 이런 논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애초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두었던 취지는 잘 살려야 할 것이라 본다. 특히, 기사를 통해 많은 범죄사건이 공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관 및 기자들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강간죄 대상에 ‘남성’이 추가됐다. 즉, 종전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였지만 개정법에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런 법 개정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 강간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였다. 물론, 강간죄가 신분범죄는 아니니 여성에 대한 다른 여성의 강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90% 이상의 강간사건이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강간죄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들 말한다.

문제는 예외적으로나마 남성에 대한 강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전환자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남성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종전 형법 하에서는 강간죄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해야 했다. 물론,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남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이로써 문제의 일부는 이미 해소되었지만 차제에 입법적으로 관련 논란을 깨끗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유사강간이란,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또는 가해자의 성기 외의 것을 피해자의 성기(항문 포함)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태행위·유사성행위는 종전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결국, 유사강간죄의 신설은 이러한 형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비친고죄’ ‘남성강간’ ‘유사강간’ 세 개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고 다시 하나로 요약한다면 ‘처벌강화가 되겠다’.